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52조(입주대상자 자격 확인 등)에 의거 ‘동작 센트럴 등문 디 이스트’당첨자 및 예비입주자(예비당첨자)분들께서는 계약체결 전 반드시 당첨적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자격 심사 과정에서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 계약이 불가 하며, 청약통장계좌부활을 신청 해야합니다.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께서는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서류를 지참하신 후, 반드시 기간내 홍보관에 방문하여 서류제출 및 자격검수를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서류검수 주요 일정

구분 대상	당첨자 당첨자 전체(특별공급/일반공급) 7월 23일(목)~7월 27일(월) (홈페이지를 통한 방문예약제) 7월 25일(토)~7월 27일(월)	예비입주자(예비당첨자) 예비당첨자 전체(특별공급/일반공급) 7월 23일(목)~7월 30일(목) (홈페이지를 통한 방문예약제) 7월 27일(월)~7월 30일(목)
방문 예약기간		
방문 기간		
서류검수 방문장소	※ ‘동작 센트럴 등문 디 이스트’홍보관(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동 356번지 3층) / 문의 02-3280-5519	
기타	※ 예비입주자의 동호추천 및 계약 일정을 추후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 자격 확인 서류(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2026.07.02. 이후 발급서류만 제출 가능)

※ [공통사항] 본인,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번호 뒷자리,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 포함 및 ‘상세’로 발급하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내용		적용
개인정보활용동의서	당첨자	▶ 홍보관 비치	필수
서약서	당첨자	▶ 홍보관 비치	필수
신분증 사본	당첨자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모바일 신분증 불가) ※ 2020.12.21. 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구비필요	필수
	배우자	※ 내국인이 아닌 경우 : 재외동포(국내거소사실신고증) / 외국인(외국인등록증)	해당자
인감도장,인감증명서	당첨자	▶ 인감증명서 ‘본인발급용’ or 서명사실 확인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대리신청 불가) ※ 온라인 발급의 경우 기입필요: 발급기준(본인발급) / 발급용도(서류제출 및 공급계약 용) / 제출처(등문건설)	필수
주민등록표 등본	당첨자	▶ 주민등록번호(세대원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	필수
	배우자	▶ 당첨자의 배우자가 분리세대일 경우	해당자
주민등록표 초본	당첨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본인의 세대주여부 및 해당거주기간 인정 확인 등	필수
	직계존속	▶ 소득 산정 시 당첨자의 가구원수로 인정 받고자 하는 경우(공고일로부터 1년이상 등재) 등	해당자
가족관계증명서	당첨자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필수
	배우자	▶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당첨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등본 상에 등재되어 있을 경우(배우자 분리세대 포함)	해당자
	직계비속	▶ 신생아 특별공급인 경우 대상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필수
혼인관계증명서	당첨자	▶ 혼인여부 확인 등 (상세로 발급)	필수
출입국사실증명원	당첨자	▶ “출생일~모집공고일 현재” 내역 / 인터넷 ‘정부24’ (또는 주민센터)에서 발급가능	필수
자격요건 구비여부	당첨자	▶ 홍보관 비치	필수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당첨자 및 만19세이상 세대원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청약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도 제출/성명및주민등록번호를포함하여발급/과거변동 사항 표기 전체 내역 ※ 분리된 배우자와 같은 주민등록상 등재된 배우자 및 성년자인 세대원 전원 필수 - 발급처: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해당자
소득증빙서류	당첨자 및 만19세이상 세대원	▶ 당첨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 입증서류 ※ 분리된 배우자와 같은 주민등록상 등재된 배우자 및 성년자 세대원전원 소득서류 포함	해당자
비사업자 확인각서 /사실증명서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각서	당첨자 및 세대원 당첨자 또는 배우자	▶ 무직자임을 확인하는 증빙 서류 ▶ 현재 임신중인 당첨자 또는 배우자의 증명 (임신진단서 외 불가) / 출산의 경우 출생증명서 제출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 / 출산이행각서는 홍보관 비치	해당자
부동산소유현황 및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당첨자 및 세대원	▶ 소득기준은 초과하지만, 부동산 자산가액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청약 신청한 경우 ※ 소유부동산이 없는 경우, 신청결과 제출	해당자
부동산소유확인서	당첨자 및 세대원	▶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 부동산 → 부동산 소유 현황(소유현황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 결과) ※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공개 체크	해당자
입양관계증명서	당첨자 또는 배우자	▶ 자녀가 입양인 경우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 관계증명서 제출	해당자
해외근무 증빙서류 (단신부임)	당첨자	▶ 단신부임 증명 - 파견 및 출장 명령서, 사업 또는 근로관련 서류, 취업 또는 사업비자 발급내역 등	해당자
	세대원	▶ 출입국사실증명원 - “출생일~모집공고일 현재” 내역 / 인터넷 ‘정부24’ (또는 주민센터)에서 발급가능	해당자
복무확인서	당첨자	▶ 10년 이상 장기 복무 군인이 다른 주택 건설지역의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자(25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포함)	해당자
무주택 소명자료	당첨자 및 세대원	▶ 무주택 및 무주택간주(소형저가주택, 농어가주택 등)를 증명하는 서류 - 건물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주택공시가격증명원, 무허가건물확인서등	해당자
부적격 소명자료	해당 사유	※ ‘주택소유여부 판정기준’에 따른 해당 필요서류 및 자격 증빙 서류 등	해당자
기존주택 처분서약서	당첨자 및 배우자	▶ 출산특례 등에 따른 기존주택 처분조건에 해당하는자 (홍보관 비치)	해당자
대리인	위임장	-	▶ 홍보관 비치
	인감도장	당첨자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신청은 불가
	인감 증명서	당첨자	▶ 발급기준(본인발급) / 발급용도(서류제출 및 공급계약 위임용) / 제출처(등문건설)
	신분증	대리인	▶ 당첨자 본인 외에는 모두 제3자로 간주함(직계존·비속 포함)

※ 당첨자격 확인을 위하여 상기 서류 외에 사업주체에서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출된 서류의 진위여에 따른 추후 처분(부적격,당첨취소 등)의 책임은 당첨자에게 있습니다.

■ 소득증빙 서류

상시 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시점		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시점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근로자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 자영업자,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일용직근로자	
해당자격	소득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근로자	일반근로자	① 재직증명서 출산휴가 및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출산휴가 휴직기간을 명시하여 발급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전년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직인날인 매월신고 납부대상자확인으로 발급 또는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 계속 휴직으로 월평균소득 산정이 어려운 경우 휴직 전 정상 재직기간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으로 확인 ※ 출산휴가 기간 중 고용보험을 수령한 경우 출산전후 휴가 확인서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① 해당 직장 ② 해당 직장/세무서
	금년도 신규취업자 또는 금년도 전직(이직)자	① 재직증명서 ② 금년도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 근로기간이 1개월 경과하지 못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과 동일한 직장의 동일 직급 동일 호봉인 자의 전년도(발급되지 않을 경우 전전년도) 근로자 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하거나 본인의 근로연봉계 약서를 제출받아 월평균 소득을 추정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①② 해당직장
	전년도 전직(이직)자	① 재직증명서 ② 전년도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① 해당 직장 ② 해당 직장/세무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자 (건강보험증 상 직장가입자만 해당)	① 재직증명서(사업자의 직인 날인 필수) ②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① 해당 직장 ② 세무서
자영업자	일반과세자(사업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① 사업자등록증명 ②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①, ② 세무서
	법인대표자	① 전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직인날인) ② 전년도 재무재표원본 및 원천징수이행명세서(직인날인) ③ 재직증명서 (직인날인) ④ 사업자등록증명 및 법인등기사항증명서(원본)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①, ②, ③ 해당직장 ④ 세무서
	신규사업자 (소득입증서류 제출 불가자)	① 사업자등록증명 ② 국민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모집공고일 이전 가입한 경우만 인정) 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모집공고일 이전 최근의 신고분만 인정)	① 세무서 ② 국민연금관리공단
프리랜서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① 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또는 간이지급명세서(직인 날인) ② 위촉(해촉)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원본, 직인날인)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① 해당 직장/세무서 ② 해당 직장
국민기초생활수급자		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공급신청자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이면 해당 세대 전체가 기준 소득 이하인 것으로 간주	① 주민센터
일용근로소득자		①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또는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 (직인날인) ② 위촉(해촉)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직인날인) ※ 금년도 신규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또는 근로계약서 ※ 직업이 프리랜서이고 소득이 불규칙한 경우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및 위촉(해촉)증명서 ※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① 세무서/해당 직장 ② 해당직장
무직자 (만19세이상)		① 비사업자 확인각서 ② 전년도 사실증명서(신고사실 없음을 입증함)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 : 전년도 1월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동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	① 홍보관 비치 ② 세무서

※ 상기 소득입증서류 외 대상자의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 서류 요청을 할 수 있음

※ 해당 직장, 세무서 등 해당 기관의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 소득 입증관련 모든 서류는 성명,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표시된 서류를 제출해야 함

■ 자산입증 서류 (추첨제/소득기준 초과 신청자에 한함)

※ 주택공급 신청자 및 세대원 전원의 자산입증 서류

해당자격	자산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부동산소유 현황’이 있는 경우	본인 및 세대원 전원	▶ 주택의 경우 ① ‘부동산 소유 현황’ 조회결과 ※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② 등기사항전부증명서 ③ 주택 공시가격 ※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 또는 “일사편리(kras.go.kr)”에서 부동산종합증명서를 발급, 제출하시면 소유권 등기사항 및 공시가격 및 공시지가 확인가능 ④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단위, 주택·건물·토지 대상)	①②대법원 인터넷등기소 ③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④ 위택스
		▶ 주택외의 집합건물의 경우 ① ‘부동산 소유 현황’ 조회결과 ※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② 등기사항전부증명서 ③ 건축물 시가표준액 결과 ※ 발급방법: 이택스(서울) 이용안내 > 조회, 발급 > 주택 외 건물 시가표준액 조회결과 위택스(서울 외) > 지방세정보 > 시가표준액 조회 > 건축물 시가표준액 결과 ※ 이택스, 위택스에서 조회가 어려운 경우에는 건물시가 확인을 위하여 “재산세 과세내역”을 발급받아 건물시가를 확인가능 ④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단위, 주택·건물·토지 대상) ⑤ 개별공시지가 확인원	①②대법원 인터넷등기소 ③ 이택스, 위택스 ④ 위택스 ⑤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 토지의 경우 ① ‘부동산 소유 현황’ 조회결과 ※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② 등기사항전부증명서 ③ 개별 공시지가 ※ 개별 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표준지 공시지가 사용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또는 “일사편리(kras.go.kr)”에서 부동산종합증명서를 발급, 제출하시면 소유권 등기사항 및 공시가격 및 공시지가 확인가능 ④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단위, 주택·건물·토지 대상)	①②대법원 인터넷등기소 ③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④ 위택스
		▶ 농지법 및 초지법 등에 따라 토지가액에서 제외되는 경우 ① 농지대장 ② 축산업 허가증 ③ 토지이용계획확인서 ④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단위, 주택·건물·토지 대상)	① 행정복지센터 ② 지자체축산과 ③ 토지이음(www.eum.go.kr) ④ 위택스
‘부동산소유 현황’이 없는 경우	본인 및 세대원 전원	① 부동산소유현황 ※ 발급방법: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 소유 현황’ 조회결과를 인쇄하여 제출 ② 미과세증명서 또는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단위, 주택·건물·토지 대상) ※ 발급방법: 위택스 > 발급 > 문서발급 안내 및 발급 > 미과세증명서 2025~2026년(전국단위 주택·건물·토지 대상),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① 대법원인터넷등기소 ② 위택스

■ 자산보유기준(추첨제 대상자만 해당)

구분	자산보유기준	자산보유기준 세부내역		
부동산 (건물+토지)	3억 3,100만원 이하	건축물	•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53조에 의거 주택으로 보지 않는 경우에도 “해당 주택과 그 주택의 부속토지”는 자산보유기준 적용대상이 됨		
		• 부동산을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경우 전체가액 중 해당 지분가액만을 소유한 것으로 봄. 다만, 세대원간에 지분을 공유하고 있는 경우 세대원간의 지분 합계액을 소유한 것으로 봄		
		토지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단, 아래 경우는 제외	
			-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대장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업법」 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중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	

※ 당첨자격 확인을 위하여 상기 서류 외에 사업주체에서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출된 서류의 진위에 따른 추후 처분(부적격, 당첨취소 등)의 책임은 당첨자에게 있습니다.